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상충되는 과태료 절차
규정 삭제 〉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2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과태료 절차 규정 삭제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1일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Ⅲ. 검토의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과태료 절차 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절차 및 미납시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	-------

나. 검토의견

2007년 국회는 ‘질서위반행위¹⁾’의 성립과 이러한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²⁾는 개별 법령이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반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은 이의제기 절차, 관할법원 통보, 과태료 미납시 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최저임금법 조문 비교

구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최저임금법
과태료 처분 불복시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제20조제1항)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제기(제31조제3항)
관할법원 사실 통보 시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21조제1항)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보(제31조제4항)
과태료 미납시 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24조제3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31조제5항)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과태료 관련 규정의 일원화 및 정비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근로기준법」 및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21일, 「공인노무사법」은 2010년 5월 25일, 「임금채권보

장법」은 2012년 2월 1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28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각각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40